

해외연수에관한규정

제정 1998. .
 개정 2006. 6.
 개정 2012. 3. 1
 개정 2017. 7. 1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직원의 유급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자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직원으로서 해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개시일 현재 만 3년 이상 근무한 자 이어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.

제3조(인원) 매년 해외연수를 허가할 수 있는 인원은 교원, 직원 각각 전체 인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.

제4조(적용제한) 이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 적용을 받은 자는 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이 규정에 의한 유급 해외연수를 할 수 없다.

제5조(허가절차) 해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시작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하되, 교원은 기획실장, 직원은 교육지원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급여) ① 근속기간이 만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외연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전액을 지급하고, 해외연수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정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.

② 근속기간이 만 3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부가 시행하는 국비 또는 특정 해외 차관에 의한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.

③ 근속기간이 만 3년 이상인 자로서 기타 국비에 준하는 해외연수, 외국의 학교 및 기관에서 장학금 또는 보수를 받고 해외연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급 전액을 지급하고 해외연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.

④ 근속기간이 만 3년 미만인 자로서 해외연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수 첫째달은 기본급여의 전액을, 둘째달은 기본급여의 반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지급하지 아니하며, 해외연수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인사상의 처우) ① 근속기간이 만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외연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승진에 있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만 3년 미만 근무한 자로서 해외연수의 허가를 얻은 교직원은 1년간에 한하여 승진에 있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
제8조(출국신고 및 귀국보고) 해외연수자는 출국 1주일 전에 출국신고서 별지(서식2)를 귀국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귀국보고서 별지(서식3)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9조(해외연수자의 의무)** ① 해외연수자는 해외연수기간 중 국위 및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여하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정지 또는 급여를 중지한다.
- ② 해외연수자가 허가된 기간을 이유없이 초과하여 귀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- ③ 해외연수자는 귀국 후 3년 이상 의무적으로 본 대학에 봉직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본 대학 소정의 직에서 퇴직할 시에는 연수기간 중 지급한 급여의 정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